완도군의회 공고 제2026 - 38호

완도군 소규모 어항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완도군 소규모 어항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년 11월 11일

완 도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완도군 소규모 어항 안전관리 관한 조례안
2. 발 의 자 : 정은상 의원
3. 제정이유
   - ○ 소규모 어항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업인의 안전 조업과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 안전시설 설치(안 제4조)
   - ○ 점검 등 유지관리 및 위탁(안 제5조 ~ 제6조)
   - ○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5. 관련법령 : 「어촌·어항법」

6. 조례안 예고기간 : 2026. 11. 11. ~ 2026. 11. 15.

7. 의견제출

-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의정지원팀)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 (우) 59121

(전화: 061-550-5935, FAX: 061-550-590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8.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지원2팀(전화: 061-550-59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완도군 소규모 어항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안 예고명	완도군 소규모 어항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완도군 소규모 어항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완도군의회의장 귀하

완도군 소규모 어항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소규모 어항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업인의 안전 조업과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어항”이란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어항을 말한다.
2. “안전시설”이란 소규모 어항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비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규모 어항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조업 활동을 위하여 어항의 여건 변화, 구조적 특성, 이용 실태, 사고 위험 요인 등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시설 설치)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안전난간, 파라펫, 미끄럼방지 등의 추락방지 시설
2. 가로등, 시선 유도표지, 표지병, 조명타워 등 시인성 증진시설
3. 어선 안전을 위한 부잔교, 선착장 등 계류시설 및 선양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점검 등 유지관리) ① 군수는 소규모 어항의 안전성과 이용 편

의성을 위하여 안정성 여부 및 기능성 유지, 이용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점검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위탁)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 관리 업무에 일부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관계법령 발췌

어촌·어항법

3.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제1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국가어항: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어장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나. 지방어항: 이용 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다. 어촌정주어항(漁村定住漁港):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라. 마을공동어항: 어촌정주어항에 속하지 아니한 소규모 어항으로서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항포구